

#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4. 12(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3. 23.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3. 23.
- 라. 상정일자 : 2010. 4. 5.(제1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김진택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2007. 11. 19일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2009. 12. 24일 판결(2007추165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결과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없는 「인천광역시 경영수익 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동 폐지조례안은

-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를 제158회('07. 9. 18) 본회의시 의결하였으나, '07. 10. 5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160회('07. 11. 1) 본회의에서 재의결 '07. 11. 12에 조례 공포되어,
- '09. 12. 24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은

-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조례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각 개발사업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에 해당하고, 특히 제3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며,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조례 제7조 제2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용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물류시설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조례 제7조 제2항 제6호)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정한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8호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 매각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은(조례 제12조 제5항) 집행기관인 시장의 계약체결에 대해 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함.

-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조례안 제19조 제4항)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음.

○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효력 없음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윤지상, 김소림,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 이 조례가 대법원 판결에 보면 부분적으로 원고측 주장도 맞지 않는 바 폐지 조례안을 대체하여 적용할 법은 있는지?

##### < 답 변 >

- 김진택 자치행정국장
  - 대부분 공유재산 관리법 등 기존 법령, 규칙으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함.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상임위에 사전 설명하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